

# ○ ○ ○ 보 통 검 찰 부

(전화번호)

20 . . .

수 신 자: 귀 하 발 신: ○ ○ ○ 보 통 검 찰 부  
제 목: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 군검사 (서명 또는 인)

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  
므로 통지합니다.

|   |         |  |
|---|---------|--|
| 처 | 사 건 번 호 |  |
|   | 연 월 일   |  |
|   | 죄 명     |  |
| 분 | 결 과     |  |

## 《처분 결과에 대한 안내》

- ① 기소유예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(情狀)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.
- ② 혐의없음처분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.
- ③ 죄가안됨처분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.
- ④ 공소권없음처분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거나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.
- ⑤ 각하처분은 ②~④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,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·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.
- ⑥ 참고인중지처분은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으로 참고인의 소재가 밝혀지면 재기신청을 하여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.
- ⑦ 공소보류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20조(공소보류)에 따라 형법 제51조(양형의 조건)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보류하는 결정입니다.
- ⑧ 이송 결정은 다른 군검찰부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결정입니다.

210mm×297mm(백상지 80g/m<sup>2</sup> 또는 중질지 80g/m<sup>2</sup>)